

1. 개정이유

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로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적용토록 하고 편평족과 요족,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입영판정검사를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적용 대상에 추가
(안 제1조)

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로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나.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(안 제17조 신설)

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.

다. 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(안 제17조의2)

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「병역법」 제17조에서 「병역법」 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.

라. 편평족과 요족 및 내반슬 판정 기준 조정(안 별표3)

중골경사각(중골피치각)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의 판정 기준 및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반슬의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확인신체검사”를 “입영판정검사, 확인신체검사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입영등 신체검사”를 “입영판정검사·입영신체검사”로 한다.

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7조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”을 “입영부대의 장은 다음”으로, “제8조 중 신장·체중에 관한 사항, 제10조”를 “제10조”로,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의 검사 방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군사교육소집
입영신체검사

제17조(입영판정검사) 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10조 신장·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은 판정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의2(중전의 제17조)의 제목 “(입영 등 신체검사)”를 “(입영신체검사)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신체검사·입영등 신체검사·지원병신체검사”를 “신체검사,

입영판정검사·입영신체검사, 지원병신체검사”로 한다.

별표 3의 질병·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03호 가목2) 중 “미만이나 30° 이상”을 “미만인 경우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 중 “30° 이상”을 “27° 이상 30°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목2) 중 “수술”을 “요측변형[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(종골피치각)이 30° 이상인 경우] 또는 수술”로 한다.

별표 3의 질병·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0호 가목1) 중 “2 이상 5”를 “7° 이상 10°”로 하고, 같은 목2) 중 “5”를 “10°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1) 중 “7 이상 10 미만”을 “7° 이상 10° 미만인 경우”로 하고, 같은 목2) 중 “10”을 “10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1조, 제17조 및 제17조의2,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1.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
2. 법 제12조제1항제4조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

3. 영 제135조 또는 영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
사람

4.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사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병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병역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<u>확인신체검사</u> , <u>입영신체검사</u> , <u>지원병신체검사</u> , 병역처분변경등(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입영판정검사, 확인신체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제3장 입영등 신체검사</u>	제3장
<u><신 설></u>	<u>입영판정검사 · 입영신체검사</u>
	<u>제17조(입영판정검사) 병무청장은</u> <u>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</u> <u>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</u> <u>는 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한</u> <u>다. 다만, 제10조 신장 · 체중에</u> <u>따른 신체등급은 판정하지 아니</u> <u>한다.</u>
<u>제17조(입영 등 신체검사) ① 다</u>	<u>제17조의2(입영신체검사) ① 입</u>

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 (제8조 중 신장·체중에 관한 사항, 제10조,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다만, 제6조,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에 따른 현역병입
영신체검사

2. ~ 4. (생략)

5. 법 제56조에 따른 군사교육
소집 입영신체검사

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1조(전시특례) 국방부장관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·입영등 신체검사·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에 있어

영부대의 장은 다음 -----

--제10조-----

-- 제외한다)의 검사 방법-----

-----.

1.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
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군사
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전시특례) -----

----- 신체검사, 입영판정검
사·입영신체검사, 지원병신체
검사 -----

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 여 질병·심신장애의 정도에 따 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 다.	----- ----- ----- 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